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2589호

제출년월일 : ２０２１년 4월 2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가.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하고,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교육 관리 및 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

다.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
3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32조, 제36조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, 제17조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교육 관련 예산 1,440천원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1. 3.31. ~ 2021. 4.20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래연습장업자 교육)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(이하 "교육"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,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3조(교육계획)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,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
2.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
3.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교육관리)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의 위탁) ① 구청장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과태료의 부과) 구청장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필증

제 호	
교육 과정명	
교육 수료일자	
교육대상자	성명
	업소명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직인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2호서식]

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대장

① 번 호	② 교 육 과정명	③ 교 육 수료일자	④ 업소명	⑤ 성 명	⑥ 생년월일	비 고

210x297㎜[보존용지(1종) 70g/㎡]

【관계법령】

□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
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
3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□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6조(권한의 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,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□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5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